

증권저축계좌 특약

제1조(약관의 적용)

“증권저축계좌(이하 “이 예금”이라 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과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개별계좌의 해당 예금별 거래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예금의 구성)

이 예금을 근거계좌로 하고, 은행이 정한 증권회사 중, 고객이 지정한 증권회사의 증권거래계좌를 연결계좌로 합니다. 이때, 연결계좌의 효력 및 이용방법은 해당 증권회사의 관련 제규정에 따릅니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 및 법인으로 합니다. 단, 증권회사별 협약에 의해 가입대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4조(가입예금의 제한)

이 특약에 의해 가입할 수 있는 예금은 “요구불성예금 및 요구불성예금 응용상품”중 은행이 지정한 것으로 하며, 증권회사별 협약에 의해 가입예금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5조(최초 가입금액의 제한)

이 예금의 최초가입금액은 은행이 정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단, 증권회사별 협약에 의해 최초가입금액이 증권회사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6조(연결계좌의 연결)

연결계좌의 위탁자는 이 예금의 예금주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제7조(연결계좌의 신규 및 실명확인)

고객이 이 예금과 연결하기 위하여 제2조의 연결계좌를 신규 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은 고객이 지정한 증권회사에 연결계좌의 신규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증권회사는 즉시 연결계좌를 신규 하여 은행으로 신규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때, 연결계좌 신규를 위한 실명확인은 은행이 대행합니다.

제8조(연결계좌 거래를 위한 자금의 이체)

- ① 은행과 증권회사의 협약에 의해, 이 예금계좌에 있는 자금으로 연결계좌의 거래를 하기로 한 경우에는, 연결계좌의 거래와 관련하여 증권회사로부터 매수대금, 공모주·실권주·유상 청약 대금, 주식배당 관련 세금의 지급요청이 있는 경우 통장, 수표, 지급 청구서, 비밀번호확인 없이 이 예금에서 지급하여 이체합니다.
- ② 은행과 증권회사의 협약에 의해, 연결계좌에 있는 자금으로만 거래를 하기로 한 경우에는, 은행은 이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고객의 별도 지시나 확인 없이, 입금 즉시 연결계좌에 이체하여 고객이 연결계좌의 거래자금으로 이용하도록 합니다.

제9조(지급자금부족 때의 처리)

- ① 이 예금의 지급가능금액이 제8조의 지급요청금액에 미달하면 지급가능자금 범위 내에서 통장, 수표, 지급청구서, 비밀번호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부족자금에 대한 증권회사의 추가적인 지급요청이 있는 경우, 은행은 이 예금의 지급가능자금 범위 내에서 통장, 수표, 지급청구서, 비밀번호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합니다.
- ③ 단, 연결계좌에 있는 자금으로만 거래를 하기로 한 경우에는 1항과 2항의 내용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위탁증거금의 지급정지)

근거계좌의 잔액 중 연결계좌와 관련하여 고객이 증권회사에 매매거래를 위탁하는 경우, 증권회사가 정한 위탁증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권회사의 요청에 따라 결재시점까지 지급정지하기로 합니다. 단, 연결계좌에 있는 자금으로만 거래를 하기로 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계좌관리 수수료)

- ① 은행은 이 예금의 “계좌관리 수수료”에 대해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과 관련된 수수료 표는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도록 하며, 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영업점에 게시합니다.
- ③ 미납된 수수료는 은행의 고객에 대해 지급해야 할 예금 등이 있는 경우, 별도의 서면통보 없이 상계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12조(해지 및 정리좌 편입)

- ① 이 예금에 대한 고객의 해지 요청 시 연결계좌에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등 연결계좌가 해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결계좌의 해지조건이 완비된 후 고객의 별도 요청에 따라 이 예금을 해지하기로 합니다.
- ② 이 예금의 해지 및 정리좌 편입은 은행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3조(거래정보 등의 제공)

고객은 지정한 증권회사의 계좌개설 또는 기존계좌의 연결을 위해, 증권회사가 요구하는 신상정보 및 이 예금의 계좌 정보를 지정증권회사에 제공하기로 하며, 이를 위해 고객이 제공한 내용을 은행이 은행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정한 증권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제14조(과실책임)

- ① 전산조작착오로 이 예금의 전산상 잔액이 실제잔액보다 과대 계상된 경우, 고객은 과대 계상된 금액을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② 과대 계상된 잔액에 근거한 연결계좌의 거래주문으로 제10조의 위탁증거금이 실제 잔액을 초과 하게 된 경우, 은행과 증권회사는 실제잔액을 초과한 금액을 근거로 거래한 예탁자산을 반대 매매하여 그로 인한 손실 및 이익은 은행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15조(양도금지 등)

이 예금의 양도, 양수 및 명의변경은 불가합니다.

제16조(면책)

- ① 이 예금의 압류 등 법적인 지급제한, 거래처의 사망, 파산선고, 기타 불가피한 상황 또는 예금주의 요청으로 인한 입금•지급정지 및 은행의 업무상 불가피한 입금•지급정지 시 연결계좌의 거래와 관련한 입금•지급정지도 정지되며, 연결계좌의 거래와 관련한 입금•지급정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하여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때에는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 ② 천재지변, 전시, 사변, 은행의 감독 또는 관리 하에 있지 않은 문제, 전산시스템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 은행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사유 등에 의하여 연결 계좌와 관련된 거래의 지연 또는 불능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수납가능 유가증권의 제한)

증권회사별 협약에 의해 수납 가능한 유가증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